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장 애 인 활 동 지 원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하고 긴급활동의 요건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수급시 대응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
- 나.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확산, 재난 발생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급여 중단,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“관할”을 “연 1회 관할”로, “제출”을 “제출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활동지원인력”을 “활동지원인력(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되려는 사람이 법 제29조제4호”를 “법 제29조제4호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맞”을 “본문 맞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천재지변”을 “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, 천재지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급여의 중단,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의2(범죄경력조회)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<u>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소속 <u>활동지원인력</u>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	제20조의2(범죄경력조회) ① --- ----- ----- ----- <u>연 1회 관할</u>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하여야 하고</u> <u>추가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</u> ----. --- <u>활동지원인력(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)</u> ----.
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<u>되려는 사람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</u> 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법 제29조제4호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(긴급활동지원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	제27조(긴급활동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(이하 “긴급활동지원”이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천재지변,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

3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 본문 및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, 천재지변-----
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급여의 중단,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44